

[첨부 1]

## 통영 죽림 디엘본 S136 기관추천 특별 공급 안내문

*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,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3.05.(금) 예정) 현재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.
*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,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* 각 기관별 추천 기준에 따른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며,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해당 신청일에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한국부동산원 청약홈( <a href="http://www.applyhome.co.kr">www.applyhome.co.kr</a> )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해야 하며, 미접수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.(단,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접수가 가능합니다.)
* 신청 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,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,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·청약과열지역 1년, 수도권 외 6개월, 위축지역 3개월(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) 동안 다른 분양주택(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)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* 신청자가 본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당사와 시공사 및 관련업체는 일체 책임지지 않으며, 해당 기관에서는 '신청자격' 및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를 충분히 안내 및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자세한 사항은 <a href="#">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3.05.(금) 예정)</a> 에 당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▲ 공급대상

- \* 공급위치 :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82-2
- \* 공급규모 및 내역 :아파트 지하 2층, 지상 27층 2개동 총 136세대

[특별공급 41세대(일반[기관추천] 8세대, 다자녀가구 12세대, 신혼부부 16세대, 노부모부양 1세대, 생애최초 4세대 포함)] 및 부대복리시설

모델	주택형 (전용면적기준)	약식표기	주택공급면적(m <sup>2</sup> )			계약 면적	세대별 대지지분	총공급 세대수	특별공급세대수
			주거 전용면적	주거 공용면적	소계				
01	84.3720A	84A	84.3720	28.6330	113.0050	160.9080	33.0897	41	4
02	84.2800B	84B	84.2800	28.4180	112.6980	160.5480	32.9877	22	2
03	83.8920C	84C	83.8920	28.2970	112.1890	159.8200	32.8390	22	2

### ▲ 배정세대

\* 기관추천 특별 공급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: 10% 이내)

구 분	84A	84B	84C	합 계
국가유공자	1(0)	1	1	3(0)
장애인	2(1)	1	1	4(1)
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	1(0)	-	-	1(0)
중소기업근로자	-	-	-	-
	4(1)	2(0)	2(0)	8(1)

- 상기 세대수는 현재 분양 인허가 진행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시 변경될 수 있으니, 청약 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\*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제 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(예비추천자)를 선정하며, 당 사업지는 40%를 적용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.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,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.

\*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며 대상자 추천시 청약주택형을 필히 선택 바랍니다.

\* 예비자 추천세대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.

### ▲ 신청자격

\* 대상자 :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제 36조에 해당하는 자(국가유공자 등,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, 중소기업근로자, 장애인)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(세대주 및 세대원)으로서 특별공급대상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

\*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(단,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제외)

① 청약예금: 85㎡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

② 청약부금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 인정금액이 85㎡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

③ 주택청약종합저축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(단,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청약홈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.)

\* 청약예금의 예치금액

구 분	통영시, 경상남도	부산광역시	울산광역시
전용면적 85㎡ 이하	200만원	300만원	250만원

- 당 사업지는 전 평형대가 상기 85㎡이하로 구성됨.

\*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제 9조 제 3항 별표2(청약예치 기준금액)에 따라 상기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.

\*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제 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(다자녀, 노부모, 신혼부부, 생애최초특별공급을 포함한다.)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.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. (단,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제 36조 제 1호, 제 55조 제 1호, 제 2호, 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)

### ▲ 기관추천 특별공급

구분	일자		참고사항
입주자 모집공고일	2021.03.05.(예정)		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(www.applyhome.co.kr)
견본주택 개관	2021.03.05.(예정)		당사 견본주택: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1-32
특별공급 접수일자	인터넷 청약	2021.03.15.(예정) 08시~17시30분	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(www.applyhome.co.kr)
	견본주택 방문청약	2021.03.15.(예정) 10시~14시	- PC : www.applyhome.co.kr - 스마트폰앱
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	2021.03.23.(예정)		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(www.applyhome.co.kr)
계약 기간	2021.04.05.~04.07.(예정)		당사 견본주택: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1-32

- 상기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미 신청시에는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.

### ▲ 당첨자 선정방법

- \*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,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\*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또는 해당 기관이 확인서(추천서)를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(미신청시에는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과 계약이 불가합니다.)
- \*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 특별 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,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### ▲ 특별공급 신청 유의사항

- \* 본 아파트는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이 적용되며, 정보취약계층(고령자 및 장애인 등)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할 경우에만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.
- \*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\*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,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\*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(자료)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\*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해지될 수 있으며,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, 당첨취

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.

- \*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(1회 특별공급 간주),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.
- \* 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’ 제 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,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,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‘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, 수도권 외 6개월, 위축지역 3개월’(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)동안 다른 분양주택(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)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- \*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\*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선정(동호수 배정 및 계약)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.
- \*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다만, 예비 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(당첨일)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.